

[직무발명보상] 사용자와 발명자의 직무발명보상 관련 합의서 중 향후 일체 권리행사 포

기 중 부제소합의 효력: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2. 23. 선고 2015가합544755 판결



1. 사용자의 직무발명 보상의무는 강행규정성 + 종업원의 보상청구권 포기 각서는 무효  
인 계약

사용자와 종업원이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하여 “종업원은 향후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일체의 민형사상 주장을 하지 않는다”는 식으로 직무발명 보상권리 포기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이는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. (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등 복수의 하급심 판결 존재)

## 2.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유효한 화해 계약 - 부제소합의 조항도 유효

그러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2. 23. 선고 2015가합544755 판결사안과 같은 유효한 화해계약도 인정됩니다. 사용자와 발명자 사이에 직무발명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청구 및 기타 민·형사를 포함한 일체의 이익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. 즉, 종업원 발명자의 직무발명 보상청구권 포기를 내용으로 포함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은 유효한 계약으로 보았습니다. 위 판결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
“사용자와 종업원 사이 작성한 합의서상 부제소 합의는 이 사건 본소청구에서 다투는 권리에 대한 부제소 합의로 봄이 타당하고, 나아가 위 부제소 합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.

합의서의 제1항에 이 사건 특허발명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점, 제4항에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는 근거로 '(구) 특허법 제40조'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점, 제3항에 추가적인 보상청구 및 기타 민·형사를 포함한 일체의 이익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대상

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, 부제소 합의의 대상은

이 사건 본소 청구에서 다투는 권리인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이 분명하다.

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구 특허법 제40조 제1항 규정이 강행규정으로서, **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발생, 행사 및 보상금의 정당한 액수에 어떠한 제한을 가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은 무효**라는 점은 원고(발명자)의 주장과 같으나,

이를 근거로 이미 직무발명이 완료되어 구체적으로 발생한 **보상금 지급청구권의 액수를 당사자가 사후에 합의한 경우 마저도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고,**

그러한 **합의 자체의 무효 여부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** 바,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, 합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졌는지, 합의의 내용 등 합의와 관련된 제반 사정을 모두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, 구 **특허법 제40조 제1항 강행규정이라는 점은 그 중 하나의 판단 요소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.**

### 3. 유효한 부제소합의 + 소송요건 판단 법리

“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  
에 위배되는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, 또한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 
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(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)에도  
어긋나는 것이므로, 소가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의 적  
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(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1다80449판결 등 참조).”

변호사/변리사, 발명자 중심 보상청구소송, 다수사건 A~Z 수행, 소송비용경감 전략

---

T. 02-591-0657 E. [kkh@kasanlaw.com](mailto:kkh@kasanlaw.com) H. [www.kasanlaw.com](http://www.kasanlaw.com)